排出 賦課金 制度

鄭 國 鉉
〈環境庁 振興協力課長〉

그동안 본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 제도를 해설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주신 환경보전협회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배출부과금 제도를 실시한지도 이제 일년이 경과하게 되어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다. 83년 9월 1일부터 84년 10월 31일까지의 부과금 부과액은 13억 6백만원(989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 13억원과 정부출연금 50억원을 합한 약63억원 전액을 장기저리의 공해방지시설자금으로 년내에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징수된 부과금은 국고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공해방지시설자금의 지원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금년도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융자조건을 보면 융자금리가 연 6%, 융자기간이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융자비율은 소요액의 90%,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서 장기저리의 자금이라할 수 있다.

정부는 85년도에도 정부출연금 80억원과 징수되는 부과금 전액을 장기저리의 공해방지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또한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85년도에 환경오염방지사업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동사업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환경오염방지사업, 방지시설투자를 위한 융자, 방지시설의 개발,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및 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 환경오염방지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환경청장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排出부과금제도를 실시한 목적이 국고수입증대에 있는것이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인 부과금을 과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이에 부수하며 징수되는 부과금은 각종 환경오염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에 있다.

부과금제도를 일년간 시행한 결과 제도자체에 부분적인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즉 부과금 기산일을 오염물질시료채취일이 아닌 개선명령일 다음날로 함으로써 개선명령일에 맞추어 개선한다든가, 부과금액이 적은 관계로 개선을 하지않고 개선기간을 연장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관계법령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부과금 산정시 85년도의 부과금 산정지수는 1.44가 됨을 유념하고 특히 부과금 납부장소는 전 금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시·군 지부 포함)와 중소기업은행이므로 납부시 주의를 요한다.

환경보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모든 배출업체가 방지시설을 완비하고 이를 정상가동함으로써 오염물질배출량을 줄이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고 이를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저마다의 처한 입장에서 환경보전을 위하며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라 생각하며 이만 부과금제도해설을 끝내고자 한다.

〈끝〉